

EU Brief

| EU 동향 |

- **웅커 신임 EU 집행위 위원장의 과제**
The Challenge of Juncker, the Next President of EU European Commission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은행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Bank Soundness to Resolve Credit Crunch
- **이라크 내전과 국제 공조**
Iraqi Civil Wa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유럽 내 미국 기업 M&A 증가의 배경**
Background of Increasing M&A of U.S. Corporations in Europe
- **유럽 하이테크 기업의 엑시트 추세**
Exit Trend among European Hightech Companies

SAMSUNG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2014년 TNW가 선정한 유럽 국가별 5대 하이테크 기업 및 2011~2013년 매출 증가율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Showpad 700%	Leetchi 340%	RUN@SHOP Run a Shop 8,357%	eyefreight 700%	Akamon Entertainment 860%	MAG MAG Interactive 5,740%	Hailo Hailo London 4,003%
2	Engagor 540%	Uplike 323%	Shopgate Shopgate 1,122%	Cleeng 513%	Cabify España 396%	iZettle iZettle 4,140%	MADE.COM 2,567%
3	WooRank 488%	Lima 260%	DeliveryHero 567%	GREENCLOUDS 500%	GetApp 347%	Fyndiq 1,324%	Swiftkey 1,258%
4	Argus Labs 114%	Creads 200%	foodpanda/hellofood 500%	imgZine 380%	ReviewPro 142%	Lifesum 695%	Affectv 899%
5	Posios -	KelBillet 186%	GetYourGuide 414%	Squala Nederland 257%	Kantox -	Campanja 524%	HouseTrip 597%

주: 2009년 이후 탄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1~2013년 매출, 트래픽, 고용자 수를 고려해 선정
 자료: The Next Web Conference 2014 - European Tech5: here are the results. (<http://thenextweb.com/tech5/>)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지침 소개

Introduction to Instructions on Compensation Lawsuits Concerning EU Competition Law Violations

As various illegal acts and painful miseries cause serious damages to groups of people,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ttempts regarding many different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s are actively conducted in Korea. As EU has put forth consistent effort to facilitate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since the mid 2000s, on April 17, 2014, the European Parliament stipulated 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 in compliance to EU Competition Law, which became a turning point for the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Now that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of EU significantly affects the direction of Korea's domestic legislation,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as well as directions for compensation lawsuits introduced by EU.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시도

최근 집단적 피해상황을 야기하는 다양한 위법행위와 고통스러운 참상을 경험하면서 한국에서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와 입법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6월 12일 동양사태의 투자 피해자 1,244명은 (주)동양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동양사태 피해자 2,300여 명이 제기한 1차 집단소송에 이은 두 번째 집단소송이다.¹ 며칠 뒤인 2014년 6월 24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다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²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미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대신 EU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명, 단체소송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EU가 미국보다 소비자피해구제에 소극적이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나마 덜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U도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바,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의회는 2014년 4월 17일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³ EU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한국의 입법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는 EU에서 도입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과 그동안 논의되어온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¹ "동양사태 피해 구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이어져." (2014. 6. 12). 『연합뉴스』.
² 참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기도 하였음.

³ 비록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지침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 행위가 경쟁법 위반행위를 감안한다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행위나 증권관련법 위반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EU 의회 통과⁴

EU 집행위 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안), 손해액의 산정에 대한 성명서 및 실무가이드,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 및 성명서(안)가 그것이다. 세 가지 개혁안 중 지침(안)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지침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회원국들은 통상 2년 내에 지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성명서나 권고(안)는 회원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종래 EU 사법재판소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전액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장애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피해자들만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지난 7년간 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위반결정 사건들의 약 25%에 대해서만 후속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안)은 경쟁법의 사적 집행 가능성을 높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⁵ 이러한 EU 경쟁당국의 노력에 화답하여 유럽의회는 2014년 4월 17일 EU 경쟁법 및 회원국의 국내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을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지침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승인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⁴ European Commission(2014. 4. 17). Antitrust: Commission welcomes Parliament vote to facilitate damages claims by victims of antitrust violations.

⁵ 김희은(2013). "EU의 경쟁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혁안의 키워드" 『경쟁저널』, 169, 145.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지침의 구체적 내용

(1) 회원국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 마련: (증거의 공개) 소송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회원국 법원은 당해 소송과 관련 있는 특정 정보에 한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다(지침 제5조). 다만, 리니언시 기업진술서, 화해절차에서 제출된 서류는 공개할 수 없으며, 경쟁당국이 조사 중 획득한 정보 및 경쟁당국의 조사를 위해 준비한 정보는 조사 종료 후에 공개 가능하다(지침 제6조). (손배소송의 시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는 피해자가 경쟁법 위반행위 인지 시 개시되고,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경쟁당국의 조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시 중단된다(지침 제10조).

(2) 경쟁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강화: (손해의 범위) 손해는 피해자의 완전보상권(right to full compensation)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손해(actual loss), 이익 손실(profit loss), 손해발생 시점부터 배상일까지의 손해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지침 제2조). (손해전가 인정) 법 위반자가 직접구매자의 소제기에 대응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위반자에게 손해전가의 항변권⁶을 부여한다(지침 제12조). (간접구매자의 손해 발생 입증 부담 완화) 경쟁법 위반행위에서 비롯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간접구매자는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구매자의 가격에 부당한 가격인상분이 있다는 사실만

⁶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on defense): 직접구매자가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인상분(overcharge)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유통단계의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구매자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항변. 가령, 밀가루 판매업자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경우, 이를 구매하여 빵을 생산·판매한 제빵업자(직접구매자)는 그 인상액을 소비자들(간접구매자)이 구입하는 빵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제빵업자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밀가루 판매업자는 제빵업자가 가격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손해전가의 항변이라고 함. 여러 유통단계가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논의되는 항변.

입증하면 손해전가가 추정된다(지침 제13조).⁷ (손해발생 입증책임 전환)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지침 제16조).

(3) 손해배상소송과 경쟁당국 법 집행의 조화 모색: (국내 판결의 효력) 회원국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경쟁법 위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지침 제9조). (연대책임) 경쟁법 위반자는 피해와 관련하여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부담하게 된다(지침 제11조).

(4)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식 촉진 장치 마련: (소송 외 합의제도) 합의(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절차 진행 시 시효 정지, 연대책임 예외를 인정하여 소송 외 해결제도의 이용을 도모하였다(지침 제17·18조). 연대책무자 중 일부만 합의 시 합의하지 않은 채무자는 합의한 채무자의 책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지며, 합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 합의하지 않은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한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U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논의

미국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사건별로 '개별화된 정의(individualized justice)'를 구현하고자 하는 유럽식 사고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 않고 종래의 행정적 규제에

⁷ 밀가루 판매업자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경우 간접구매자인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밀가루 가격담합으로 인해 제빵업자가 부담한 인상가격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 결국 소비자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⁸ 최남설현(2012. 9. 30). "유럽에서의 소비자 집단구제제도의 동향과 미래". 『상사판례연구』, 92-93.

의한 해결방법을 유지해왔다.⁸ 이에 유럽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방법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희생이라는 정의의 공백(justice gap)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등의 발달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환경이 나타남에 따라 EU는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 EU 집행위 위원회의 소비자보호총국은 2008년 11월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집단적 구제방법을 담은 녹색서(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U 집행위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의 다양한 법 인식과 제도의 차이는 새로운 EU 차원의 통일성 있는 집단구제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미국식 집단소송방법은 남소현상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 위원회의 2011년 2월 'Toward a Coherent Approach to Collective Redress' 협의를 통해 EU 차원의 소비자 집단분쟁 해결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 및 원칙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EU 집행위 위원회는 그 후 공개협의문건⁹에서 유럽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렴된 형태의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소비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U 집행위 위원회는 2013년 6월 11일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 및 성명서(안)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권고(Recommendation)가 지침(Directive)이나 규정(Regulation)과 달리 회원국들에 대해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연성법(soft law)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EU 집행위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발전 또는 구현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⁹ Public Consultation Working Paper. EC의 공개협의절차(Public consultation)는 사실상 입법을 위하여 준비하는 마지막 절차에 해당됨.

있다. EU집행위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은 경쟁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담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위 권고안은 크게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대한 부분¹⁰으로 구분된다. 권고안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대표 당사자는 비영리 성격의 기구여야 한다는 점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의 경우 성공보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점

EU가 최근 제정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은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위 지침은 회원국 간 손해배상법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쟁법 위반행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지침 제정으로 인해 EU 회원국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적 집행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U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집행위 위원회가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좀 더 진향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EU의 집행 동향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더욱 활성화하거나 그 외 다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입법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뿐만 아니라 유럽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입법 동향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¹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이하에 규정된 소비자단체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인의 해외관광과 유럽 관광산업

Overseas Tourism of Russians and European Tourism Industry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9, the number of Russian overseas tourists has continued to increase rapidly by the average of 18% per year. The number of Russian overseas tourists have increased from 9.5 million in 2009 to 18.3 million in 2013. The amount of money spent by Russian tourists overseas was the 5th largest in 2012(42.8 billion dollars), and it rose to the 4th in 2013(53.5 billion dollars), which is larger than that of U.K.(52.6 billion dollars). In 2012, the amount of money spent per Russian tourists are the largest in United Arab Emirates(3,133 euro), and the other countries that ranked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spent by the Russian tourists were all European countries, where the tourists spent 1,789 euro on average. Recently, however, such a stream of Russian tourists into Europe, which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European economy, slowed down due to the deterio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in Russia and the conflict in Ukraine. As the number of Russian tourists has decreased, European tourism companies are taking various contingency measures. Extreme measure of 'dumping' is taking place to soothe situation. Despite such various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and European tourism companies, however, the adverse condition in Ukraine still remains, and unless any special arrangement to stabilize the rouble-euro exchange rate or there are drastic changes in the macro conditions, Russian tourists' rush into Europe will only be remembered as a former glory.

우크라이나 사태로 EU와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가 주요 기업 및 국영은행으로 확대되자 러시아 측도 농산물 수입금지로 맞대응하기 시작해 이번 사태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 관광산업도 최근 러시아 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번 사태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관광객의 유럽 여행 추세와 최근 거시경제 위축 및 외교 마찰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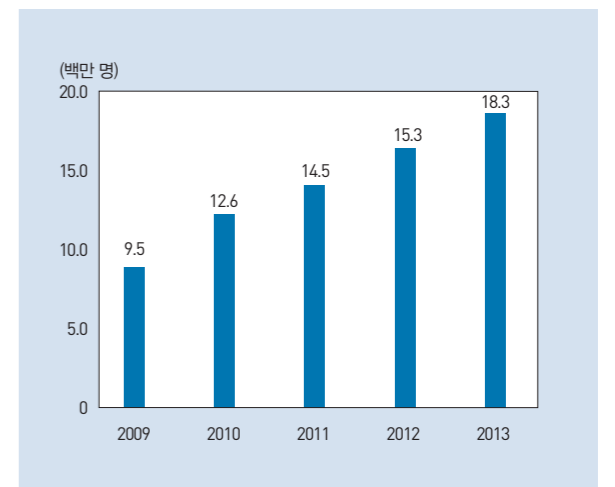
러시아인의 해외관광은 2013년까지 고속 성장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의 해외관광 인원은 연평균 18%씩 고속 성장하며 2009년 950만 명에서 2013년 1,8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러시아 관광객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금액도 국별 순위에서 2012년에는 5위(428억 달러)를 차지한데 이어 2013년에는 영국(526억 달러)을 제치고 4위(535억 달러)에 등극했다.

2012년 프랑스 여행 에이전시 아투(ATOUT)는 러시아인의 해외관광은 계속해서 늘어나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7~16%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¹

러시아인의 해외여행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 소비성향이 강한 중산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2009년간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인데 반해 소매판매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8.7%를 기록하였고 러시아인은 실제 소득의 70~80%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더불어 해외여행 등

★ 러시아 해외관광객 수



¹ 러시아 관광청(Ростуризм). <<http://www.slideshare.net/fullscreen/axentale/paspartu-russian-tourism/3>>